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호지역 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기본법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46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1. 총 괄	5
(1) 제정안의 입법취지	5
(2) 제정안의 구성체계	7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9
2. 조문별 검토의견	15
(1)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15
(2) 기본원칙(제3조)	1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21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22
(5) 기본계획, 관리계획 및 관리기준 수립과 관리효과성 평가(제6조)	

부터 제9조까지)	24
(6) 국가보호지역위원회 등(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30
(7) 보호지역의 분류 및 지정(제17조)	34
(8)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계 연결성의 확보 등(제18조)	37
(9) 관계자 참여 등(제19조)	38
(10)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제20조)	40
(11)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42
(12) 보칙(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45
(13) 부칙(시행일)	49

※ 참고자료 50

(1) 쿤밍-몬트리올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50
(2) 국내보호지역 현황(2025.12.31. 기준)	52
(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주요내용	54
(4) 2030국가보호지역 확대로드맵 비전 및 목표	55

I. 제안경위

2026년 1월 9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은 2026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전 지구 육상·해양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복원)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역 지정·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됨에 따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정·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정부가 10년마다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관계 기관은 5년마다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활동 효과성을 평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 배분·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지역 정책 심의·조정, 관리 효과성 평가, 갈등 조정,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가는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복원사업을 시행·지원하고, 개발사업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

록 함(안 제18조).

바.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 제공·접근성 보장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제DB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 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보상, 보호지역 관련 교육·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연구 및 국제협력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국가가 보호지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차.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후변화 영향, 복원 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IV. 검토의견

1. 총괄

(1) 제정안의 입법취지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시키기 위한 범지구적 로드맵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에 합의한 바 있음¹⁾.

해당 프레임워크에서는 전 지구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OECM²⁾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실천목표를 핵심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³⁾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로드맵”⁴⁾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와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지역 사회 상생 기반 강화 등의 전략을 수립함.

다만, 현재 보호지역에 대한 관련 법령이 부처별로 분산·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 비효율, 중복 규제 및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1) <참고자료1.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 주요내용>

2) OECM의 개념과 기준은 2018년 생물다양성협약(CBD) COP14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 따르면 OECM을 자연공존지역이라 명명하되 향후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23.12.관계부처 합동)에서는 ‘자연휴식지,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등’을 주요 검토대상 유형으로 예시함.

3) <참고자료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주요내용>

4) <참고자료4.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로드맵 비전 및 목표>

있다는 지적과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미비로 신규지역 지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⁵⁾.

이에 「보호지역 기본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이용과 관리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5) 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2)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총 2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제정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2장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보호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보호지역 관리 기준과 관리 효과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제3장 국가보호지역위원회 등은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조사 및 의견청취 등과 사무처에 대한 규정을, 제4장 보호지역의 분류·지정 및 관리 기준 등에서는 보호지역의 분류 및 지정,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의 확보 등, 관계자 참여 등과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제5장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제6장 보칙은 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조사 및 연구 지원, 국제 기준의 준수 및 국제협력과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세부 조문
총 칙	▪ 목적(§1) ▪ 정의(§2) ▪ 기본원칙(§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 ▪ 다른 법률과의 관계(§5)
국기보호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계획의 수립(§6) ▪ 보호지역 관리계획의 수립(§7) ▪ 보호지역 관리 기준(§8) ▪ 관리 효과성 평가(§9)
국가보호지역위원회 등	▪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설치(§10) ▪ 위원회의 기능(§11) ▪ 회의(§1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13) ▪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14) ▪ 조사 및 의견청취 등(§15) ▪ 사무처(§16)
보호지역의 분류·지정 및 관리 기준 등	▪ 보호지역의 분류 및 지정(§17) ▪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의 확보 등(§18) ▪ 관계자 참여 등(§19) ▪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20)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21) ▪ 기금의 용도(§22) ▪ 기금의 운용·관리(§23)
보 칙	▪ 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24) ▪ 시민 참여 프로그램(§25) ▪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26) ▪ 조사 및 연구 지원(§27) ▪ 국제 기준의 준수 및 국제협력(§28) ▪ 권한의 위임·위탁(§29)
부 칙	▪ 시행일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생물다양성 위기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목표 달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호지역에 대한 현행 제도상 한계를 보완하여 보호지역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임.

현재 육상보호지역은 18,466.70km²(전체 육상면적의 18.41%), 해상보호지역은 9,189.95km²(전체 해양면적의 2.09%)⁶⁾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30×30(육상·해양의 30%)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임.

연도별 보호지역 지정 비율 또한 최근 3년간 육상보호지역 1.11%p, 해상보호지역 0.29%p 증가에 그치는 등 현재 추이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30×30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연도별 보호지역 지정 비율 추이]

(단위 : %)

	2022	2023	2024	2025
육상보호지역 비율	17.30	17.45	17.81	18.41
해양보호지역 비율	1.8	1.81	1.85	2.09

주: 1. 육상보호지역 비율 : (육상보호지역 총계 - 중복면적) / 육상 국토면적

2. 해양보호지역 비율 : (해양보호지역 총계 - 중복면적) / EEZ 포함 면적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6) 2025.12.31.기준, 보호지역과 OECM을 모두 합친 통계임.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2. 보호지역 현황(2025.12.31.기준)> 참조

한편, 보호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이 각각의 소관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부처별 보호지역 유형 및 관련 법률 현황]

구분	부처	유형		소관법률	도입(제정) 연도
보호 지역	기후부	자연 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1980
			도립공원		
			군립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야생생물보호구역(지자체)			
		특정도서		도서생태계법	1998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1992
		생태·경관보전지역(시도)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1999
		습지보호지역(시도)			
		수변구역(4대강)		4대강 수계법	1998(한강) 2002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1962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1991
	해수부	습지보호지역(갯벌)		습지보전법	1999
		습지보호지역(시도)			
		해양 보호구역	생태계	해양생태계법	2007
			생물		
			경관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	2008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2010	
	국토부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녹지법	1980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
	유산청	천연기념물		자연유산법	1962
		천연보호구역			
		명승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법	2005
산림 보호 구역		산림유전자원	산림보호법	2010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재해방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통일된 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분절적 관리와 이로 인한 비효율, 중복지정, 법적 정합성 부족에 대한 우려와⁷⁾⁸⁾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신규 지정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⁹⁾.

이에 제정안은 보호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에 대한 통합된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여,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분절된 보호지역 관리체계 개선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와 주민참여에 따른 민주성 확보 및 이를 통한 보호지역 지정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호지역은 현재 소관법률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기존 법체계 내에서 기본계획과 위원회 등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

7) 동일지역이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 받아 ‘국립공원’이면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보호지역 동시 지정 등 보호지역 지정 목적과 양립불가능한 지역 지정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자료: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자료집, 2025.3.19.)

8) 육상보호지역 중복면적 11142.67km², 해양보호지역 중복면적 4719.67km²임(2025.12.기준, 자료: 기후부)

9)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일 지역에 중복하여 보호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각 법에서 정하는 행위 제한을 모두 적용받되, 관리계획의 수립과 행위 허가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다른 목적의 보호구역이 중복지정 되어도 보호지역 지정목적에 침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자연자원의 이용목적에 검토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경우에 자연생태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 제한을 통해 인간의 간섭을 줄이고 야생생물의 서식지 제공 등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만, 경제림육성단지의 경우 산림보호구역 또는 천연기념물 등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목적과 다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시 관계 행정 기관간 협의를 통해 중첩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안 제6조 등), 위원회 등(안 제10조 등)과 기존 법체계 내의 제도간 구체적인 연계방안 및 정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보호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 간 적용순위 및 권한 배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¹⁰⁾.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정안은 기제정·운영되고 있는 법률과 기본계획 및 위원회 등이 중복되고, 보호지역 지정·관리의 목표는 각 부처별 지정목적, 보호지역의 가치 및 부처별 정책 방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용곤란 의견을 제출하였고,

산림청,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은 법 제정 목적이 기존 법률체계와

1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복되어 정책 혼선과 행정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법목적 등 전반 재검토)을 제출하였음.

둘째, 제정안 제17조는 보호지역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학술적 엄정 보호구역, 원시 야생 보호구역, 국립공원형 보호구역, 자연물 보호구역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카테고리 I a(엄정보호지역), 카테고리 II(국립공원), 카테고리 V(육상·해양경관보호지역)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등 제정안의 분류가 현 제도의 기준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IUCN의 분류체계에 따를 경우 명칭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 대부분이 카테고리 VI(자원관리보호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서 세부 분류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IUCN 카테고리는 글로벌 기준으로 단일의 관리목표에 집중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복합적인 관리 목표를 지닌 국내 보호지역 지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 기준을 그대로 도입시 일부 국립공원에 대한 해제 요구, 전통사찰의 유지·보수 제약 및 공원마을지구 주민의 정주권 위협 발생 등 국민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참고로, 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요약)]

- (산림청) 기존 법률체계와 중복되며, 제정시 정책혼선과 행정비효율이 우려
된다는 의견(입법목적 등 전반 재검토) 제출
 - ※ 생물다양성 외에 개별법에 따른 보호지역 목적과 충돌우려, 기본방향이
부처별 정책추진방향과 불일치 우려, 기본계획·거버넌스 중복 →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제도 보완 필요
- (해양수산부) 기존 법률 및 제도와 혼선 발생, 위원회의 기능중복과 정책효
율저하 우려 의견(입법목적 등 전반 재검토) 제출
- (국가유산청) 보호지역은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입법목적 등 전반 재검토) 제출
 - ※ 개별법의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 달성곤란, 법 집행 혼선 초래 및 중복
규제 우려
-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이 결여되어 기금신설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제21조~제23조 관련) 제출
 - ※ 주 수입원과 사업간 연계성 낮음, 안정적 재원조달 불확실, 기금 신설 효
과 확인곤란
- (국립공원공단) 보호지역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에 IUCN 분류체계 부적합,
시행령으로 분류체계 관리 필요 의견(제17조 관련) 제출
 - ※ 특히,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Ⅱ(국립공원)와 카테고리Ⅴ(경관보호구
역) 특성 혼재
- (경기도 수원시) 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과 효과성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¹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7조, 제9조 관련) 제출
-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 의견(제22조 관련) 제출

11) 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효과성 평가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삭제” 의견 제출

2. 조문별 검토의견

(1)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안 제1조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안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이를 통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및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¹²⁾,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12)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는 반면,

제정안은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이라는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조는 생태계, 생물다양성 등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및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 등의 뜻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보전”이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온전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생태계의 기능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호지역”이란 생물다양성, 자연경관, 지질학적 특성,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
6. “생태적 연결성”이란 보호지역 간 또는 보호지역과 그 주변 지역 간의 생

제 정 안

태계적 연속성과 이동 가능성을 말한다.

7.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湫)·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8. “생태네트워크”란 보호지역으로 구성되고 생태적으로 연결된 공간 체계를 말한다.
9. “관리효과성 평가”란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정도와 관리 활동의 효과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특히, 여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던 ‘보호지역’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보호지역을 법적 관리대상으로 명시하려는 점에서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조와 제2조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통로, 생태관광’ 등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타 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용어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산림청은 연관된 법률과 용어 등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의 제정 목적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는 만큼 보호지역의 정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¹³⁾,

현재 보호지역에 대한 법률 중 「수산자원관리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수계법 등 정의규정에서 누락된 법률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⁴⁾.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의 목표는 각 부처별 지정목적¹⁵⁾, 보호지역의 가치 및 부처별 정책 방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3) 참고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2008)은 ‘보호지역’을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자연의 장기적 보전을 위해 지정·인지·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CBD, 협약 제2조)은 특별한 보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정, 통제,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14) 국립공원공단은 안 제2조제3호(보전)에 대하여 법적 용어로 ‘온전성’이 아닌 ‘완전성’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과 제5호(보호지역)에 대하여 “생태계 기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5) 생물다양성 보전과 함께 재해예방, 수원함양, 자연유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기본원칙(제3조)

안 제3조는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통한 합리적 보호지역 지정·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보호지역은 종(種), 서식지, 유전적 다양성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요소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2. 보호지역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3. 보호지역의 관리는 과학적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리목표의 달성 정도 및 관리활동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과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보호지역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보호지역의 관리로 인한 비용과 혜택은 공정하게 분담·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알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6.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리 활동 및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의 관리는 국토 및 자원이용계획 등 관련 분야의 계획과 통합적

제 정 안

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 제3조제4호와 제6호의 ‘보호지역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참여 보장 및 관리로 인한 비용과 혜택의 공정한 분담·공유’와

‘보호지역의 지정 등 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의 공정한 공유’는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안 제3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목표 등은 보호지역의 가치 및 부처별 정책 방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보호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동 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등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각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호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지역의 생태적 건강성과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보호지역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민간,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정책은 부처별로 지정목적과 보호지역의 가치, 부처별 정책 방향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안 제5조는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제정안이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기존의 보호지역 관련 일반법보다 우선함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지역’ 분야에서 제정안에게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재 보호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제정안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할 경우, 기존 관계 법령 계획 체계와의 이중 적용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⁶⁾.

1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

참고로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현 보호지역의 관리는 각 보호 목적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므로 현 소관 부처별 법률을 제정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제·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관리 목표는 각 부처별 지정목적, 보호구역의 가치 및 부처별 정책 방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용곤란 의견을 제출함.

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 관리계획 및 관리 기준의 수립과 관리 효과성 평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6조는 정부로 하여금 10년마다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보호지역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관리 기준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관리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음.

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생태적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관련 국토계획·환경계획을 고려한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의 지정, 분류, 해제 및 변경에 관한 기준과 관리 원칙 4.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 강화 방안 5.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체계 및 운영 기준 6. 보호지역 관리 인력 양성,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자원 조달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8. 보호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호지역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정 안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호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지역의 핵심 가치에 대한 평가
2. 관리 비전 및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의 설정
3. 핵심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 등 구역의 설정
4. 생물다양성의 위협 요인의 분석 및 대응 방안
5. 보전 및 관리 전략
6.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7.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8. 운영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9.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결과 반영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지역 관리 기준) 보호지역은 규모·관리 목표·생물다양성의 위협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 인력의 규모
2. 관리 시설 및 장비
3. 주요 생물다양성 지표 및 생물다양성의 위협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 정 안

- 제9조(관리 효과성 평가)** ①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리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효과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차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배분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효과성 평가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현재 보호지역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등은 있으나, 보호지역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이 부재하므로 이를 포괄하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임.

또한, 관리 효과성 평가는 관리 목표 달성 여부와 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공개하는 것으로, 보호지역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감독 장치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제정안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기존 개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보호지역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

현재 보호지역에 대한 개별법 중 「자연공원법」은 ‘공원기본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 보호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관련 기본계획 등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므로 계획간 정합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존 제도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별법의 기본계획, 관리계획 관련 규정]

부처	유형		소관법률	
			법률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기후부	자연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설립 등) 제17조의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립공원		
		군립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자체)			
	특정도서		도서생태계법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습지보호지역(시도)			
	수변구역(4대강)		4대강 수계법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고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부처	유형		소관법률	
			법률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해수부	습지보호지역(갯벌) 습지보호지역(시도)		습지보전법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해양 보호구 역	생태계	해양생태계법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생물		
		경관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 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국토부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녹지법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도시녹화계획)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유산청	천연기념물		자연유산법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천연보호구역			
	명승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법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산림 보호 구역	산림유전 자원	산림보호법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재해방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습지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관리·평가계획과 중복되고, 관리 계획, 관리기준,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

구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가유산청은 기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보호계획과 제정안의 관리계획 간 중첩사항이 있으므로, 절차 간소화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개별법령 법정 기본계획 등의 수립·이행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⁷⁾.

둘째, 안 제11조는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에 따른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안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 제8조의 경우 보호지역 관리 기준을 제정할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⁸⁾.

17) 추가로 “경기도 수원시”는 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과 효과성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효과성 평가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삭제)

18) 안 제8조(보호지역 관리 기준) 보호지역은 규모·관리 목표·생물다양성의 위협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각 호 생략)

(6) 국가보호지역위원회 등(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보호지역의 통합·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호지역 지정, 분류,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요구 등 조사 및 의견청취 권한을 가지게 하며, 소속으로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보호지역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국가유산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환경, 생태, 해양, 법률 또는 공간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 정 안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점검결과 및 관리 효과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지정, 분류,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호지역 정책 및 계획의 부처 간 조정과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
5. 보호지역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6. 보호지역 관련 재정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참여 및 공정한 혜택 공유에 관한 사항
8. 보호지역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와 정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

제 정 안

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전문가·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보호지역 또는 관련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

제 정 안

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국가보호지역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보호지역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별법에 따른 보호지역별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¹⁹⁾, 동 위원회가 개별법에서 지정한 보호지역의 해제까지 일괄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하며²⁰⁾,

추가적인 위원회 구성보다는 관계 부처간 연계와 협의 강화를 통한 기존 부처별 위원회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기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관련 위원회로는 「자연공원법」의 공원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습지보전법」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4대강 수계법의 각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중앙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자연유산위원회와 시·도자연유산위원회가 있음.

20) 기후부는 보호지역은 지정 취지, 제도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관련 법령 및 재정 배분 방향의 일괄검토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7) 보호지역의 분류 및 지정(제17조)

안 제17조는 ①생물다양성 가치 등 보호지역의 분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②학술적 엄정 보호구역, 원시 야생 보호구역, 국립공원형 보호구역, 자연물 보호구역, 서식지 및 종 관리구역, 경관 보호구역, 자원 관리 보호구역 등으로의 보호지역 분류, ③기준에 따른 보호지역 지정·관리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7조(보호지역의 분류 및 지정) ① 국가는 보호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고유종,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대표성 등 생물다양성의 가치 2. 생태계의 대표성 및 고유성 3. 생태적 연결성에 대한 기여도 4. 생태계서비스 기능의 중요성 5. 개발 압력, 기후변화 영향 등 생물다양성의 위협 및 취약성의 정도 6. 해당 지역의 복원 가능성 및 관리 용이성 ② 보호지역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보호지역 관리 범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분류한다. 1. 학술적 엄정 보호구역: 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학술적 연구 또는 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엄격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원시 야생 보호구역: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고 원시 그대로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영구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지역 3. 국립공원형 보호구역: 생태계 보호와 함께 생태탐방 및 교육 등 국민의 건전한 여가와 휴양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자연물 보호구역: 보전 가치가 높은 특이한 자연물이나 지형·지질학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5. 서식지 및 종 관리구역: 특정한 생물종이나 서식지의 보전 및 복원을 위

제 정 안

하여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6. 경관 보호구역: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생태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7. 자원 관리 보호구역: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하는 지역

③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분류 및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국제적 분류기준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는 보호지역을 엄정보호구역, 원시야생지역, 국립공원, 자연기념물,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육상(해상)경관보호지역, 자원관리보호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국제적 분류기준에 부합하게 국내의 보호지역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

-IUCN 카테고리: 국립공원을 비롯한 세계의 보호지역을 관리목표에 따라 7개 유형으로 분류한 국제적 기준

*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04)에서 IUCN 카테고리를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

유형	카테고리 명칭	관리 목표
I	a 엄정보호구역	과학연구 등 목적으로 인간의 간섭은 최소화
	b 원시야생지역	대규모의 원시 야생을 보존하며, 제한적 이용만 허용
II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와 함께 교육 및 제한적인 휴양 기회 제공
III	자연기념물	자연기념물 등을 보호하며, 제한적 탐방만 허용
IV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특정 서식지, 종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보전 관리
V	육상(해상)경관보호지역	육상/해상 경관의 보전 및 대중 향유 기회 제공
VI	자원관리보호지역	보전 목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연자원 이용 가능

자료: 국립공원공단

다만,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카테고리 I a(엄정보호지역), 카테고리 II(국립공원), 카테고리 V(육상·해양경관보호지역)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등 제정안의 분류가 현 제도하의 기준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은 개별법에 따라 지정 목적이 상이하여 생물다양성을 기준으로 획일화된 분류기준 적용이 곤란하고, IUCN의 분류체계에 따를 경우 명칭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 대부분이 카테고리 VI(자원관리보호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서 세부 분류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립공원공단은 IUCN 카테고리는 글로벌 기준으로 단일의 관리목표에 집중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복합적인 관리 목표를 지닌 국내 보호지역 지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 기준을 그대로 도입시 일부 국립공원에 대한 해제 요구, 전통사찰의 유지·보수 제약 및 공원마을 지구 주민의 정주권 위협 발생 등 국민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²¹⁾.

21) 국립공원별 IUCN카테고리 (자료: 국립공원공단)

구 분	국립공원
카테고리 I a (엄정보호구역)	(다도해해상) 백도, 칠발도 (덕유산) 안성칠연계곡 광릉요강꽃 특별보호구역
카테고리 II (국립공원)	설악산, 소백산, 지리산, 오대산, 월악산, 다도해해상, 월출산, 주왕산, 속리산, 가야산, 치악산, 변산반도, 내장산, 한라산, 한려해상, 태안해안, 팔공산
카테고리 V (육상(해상)경관보호지역)	북한산, 계룡산, 덕유산, 경주, 무등산, 태백산 ※ 도심에 인접하거나, 문화유산이 공원 핵심가치인 국립공원

(8)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의 확보 등

(제18조)

안 제18조는 국가로 하여금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개선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건설 또는 건축하는 자로 하여금 생태적 연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생태계 연결성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 정 안
제18조(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의 확보 등) ① 국가는 기존 기반시설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로, 철도, 댐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 또는 건축하는 자는 생태적 연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와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²⁾.

22)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관계자 참여 등(제19조)

안 제19조는 ①국가로 하여금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보호지역의 지정·변경 등 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로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면서,

②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에게 보호지역 지정, 변경, 해제 등 전과정에 걸친 참여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9조(관계자 참여 등) ① 국가는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의 토지소유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 걸친 참여 2. 보호지역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 및 접근성 보장 3.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보호지역의 합리적 관리 및 원활한 신규 지정에 중요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각 호생략)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미를 지닌 지역사회, 토지소유자나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미있는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19조의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이미 규정된 기본원칙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³⁾.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된 사항은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용곤란 의견을 제출하였음.

23)

안 제3조제6호	안 제19조
제3조(기본원칙)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u>보호지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리 활동 및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① 국가는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u>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10)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제20조)

안 제20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보호지역의 지정, 분류, 해제 및 관리 현황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제 정 안
제20조(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지역의 지정, 분류, 해제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 2. 보호지역 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에 관한 정보 3.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4. 재정 투입 및 성과 등 재정 현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정보 및 소관 보호지역 관련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갱신하여야 하며, 정보의 표준화와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보호지역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20조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보호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2026년 현재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1

조²⁴⁾에 근거한 “한국보호지역 통합 DB관리 시스템”²⁵⁾이 구축·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⁶⁾.

24)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http://kpda.kr>)

26) 추가로 안 제20조제5항의 ‘환경부령’은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1)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안 제21조는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이하 “기금”)를 규정하고, 안 제22조는 기금의 용도로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로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 정 안
제21조(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국제 협력 기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보호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2. 제20조에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3.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4. 제2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제25조에 따른 보호지역 보전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지원
 6. 제26조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7. 제27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지원
 8. 제28조에 따른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여 보호지역 지정, 관리,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주 수입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낮고 안정적 재원조달이 불확실하며, 기금 신설 효과 확인이 곤란하여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요건²⁷⁾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금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부처별로 관리 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재원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⁸⁾.

27)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28) 제정안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12) 보 칙(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안 제2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역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관련 홍보 강화 및 교육부 장관의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보호지역 등 관련 내용 포함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27조는 국가의 보호지역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과 활용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와 안 제29조는 국가의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서 국제협약 및 기준 준수 등과 제정안에 따른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내용을 각각 포함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장 보 칙
제24조(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가치와 중요성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보호지역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민 참여 프로그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호지역 보전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

제 정 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시민과학 프로그램
2. 자원봉사 활동
3. 생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4. 보호지역 공동 모니터링
5. 지역사회 기반의 보전 활동 및 파트너십 구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보호지역 인근 지역사회가 보전 활동의 실질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육성
2. 보호지역의 관리 및 모니터링과 관련 지역 일자리 창출
3.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② 국가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역 공동체의 보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공동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 및 연구 지원) ① 국가는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는 과학적 지식과 지역 고유의 생태 관련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주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
2.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및 보호지역의 적응 방안 연구
3. 생태계 복원 기술 및 적용
4. 보호지역 관리기법의 개선 및 개발
5. 보호지역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제 정 안

6. 지역 고유의 생태 관련 경험 및 지식의 조사·발굴 및 활용 방안 연구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제 기준의 준수 및 국제협력) ① 국가는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 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관련 국제 협약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보호지역의 정의, 분류, 관리 기준 및 관리 효과성 평가 등에 관하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보호지역 관리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도출된 성과를 국내 보호지역 정책과 관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와의 기술 및 정책 협력
2.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 수행 및 기술 교류
3. 국제기구와의 인력 교류 및 역량 강화
4. 국제회의 참여 및 성과 공유
5. 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 협약 및 기준의 준수, 국제협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보호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국민의 인식증진과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및 지원,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28조는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기준의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의무이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점에서, 안 제29조는 관련 사업 등에서의 권한 위임·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위임·위탁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4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보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제상 보칙 규정이란 법률의 실체규정과 관련되는 절차적인 사항, 그 밖에 부수적인 사항 등 실체규정 부분에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인 사항을 말하나²⁹⁾,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절차적인 사항 또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 체계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⁰⁾.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별로 보호지역의 관리 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9) 법제기준과 실제, p.620 (국회사무처, 2024.5.)

30) 관련 입법례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제26조), 교육·홍보(제29조)를 보칙(제7장)이 아닌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은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제6조)과 물환경 연구·조사활동에 대한 지원(제6조의2)를 제1장 총칙에 규정하고 있음.

(13) 부칙(시행일)

부칙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제정, 조직정비, 예산반영 등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 6788-5541

참고 1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비전 (2050 Vision)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목표 (2050 Goals) (4개)	A 생태계(면적, 연결성, 온전성)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B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D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실천목표 (2030 Targets) (23개)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① 지구 모든 육지와 해양에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의 손실을 30년까지 제로화 ② 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30% 복원·보장 ③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 최소 30% 보호지역,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통해 관리 ④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 인간-야생동물 상호작용 효과적 관리 및 갈등 방지 ⑤ 야생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 보장 ⑥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을 최소 50% 감소시키고, 주요 종 및 지역 중심으로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제거를 위한 퇴치·조절 ⑦ 환경 유실 영양, 살생물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오염 감소 ⑧ 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통해 저감·적응·회복에 기여하고, 저감·적응 노력의 생물다양성 악영향은 회피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⑨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보호, 모든 사람(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환경적 이익 보장, IPLC의 관습적 이용 보장 ⑩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산활동(농·수산·어업·임업 등) 지속성 유지 ⑪ 매체질 조절, 자연재해 보호 등 생태계 기능 서비스 복구·유지·증진 ⑫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녹지 및 수변공간 면적·질, 접근성 및 이익 증대 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 ⑭ 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 및 경제 분야의 정책·규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 공공 및 사적 영역 활동 및 재정흐름에 동조 ⑮ 대기업,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⑯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소비·선택을 보장하고,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감소 ⑰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 수립·이행·강화 ⑱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25년까지 규명, 5,000억 달러/년 절감 ⑲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동원, 개도국 금융 지원을 '25년까지 200억달러, '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지원 ⑳ GBF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접근 강화, 과학기술 협력 촉진 ㉑ 인식·교육·연구 등 통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보장 ㉒ 여성, 소녀, 청소년, 장애인, IPLC 등의 공평한 접근, 대표성 및 참여 보장 ㉓ 여성, 소녀의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이행/평가	GBF의 내용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반영하고,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 체계 구축

참고 2

국가보호지역 지정(보호지역 통합 DB 등록)비율('25.12월 현재)

- 육상보호지역 : $18,466.70\text{km}^2 / 100,284\text{km}^2(\text{육상 국토면적}) \times 100\% = \underline{18.41\%}$
 ※ $18,466.70\text{km}^2 = \text{육상보호지역 총계 } 29,609.38\text{km}^2 - \text{중복면적 } 11,142.67\text{km}^2$
 ('22) 17.30% → ('23) 17.45% → ('24) 17.81%
- 해양보호지역 : $9,189.95\text{km}^2 / 438,991\text{km}^2(\text{EEZ 포함 면적}) \times 100\% = \underline{2.09\%}$
 ※ $9,189.95\text{km}^2 = \text{해양보호지역 총계 } 13,909.62\text{km}^2 - \text{중복면적 } 4,719.67\text{km}^2$
 ('22) 1.8% → ('23) 1.81% → ('24) 1.85%

《 국가보호지역 세부현황('25.12.) 》

구분	부처	유형		소관법률	전체 개소수 및 면적*(km ²)				
					개소	합계	육상	해양	
총계					1,767	43,519.00	29,609.38	13,909.62	
보호 지역	기후부	자연 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24	6,937.66	4,158.89	2,778.77	
			도립공원		30	1,012.70	598.68	414.02	
			군립공원		28	253.96	251.07	2.89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26.57	26.57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자체)			399	998.80	998.80	-	
		특정도서		도서생태계법	260	13.85	13.85	-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9	245.05	245.05	-	
		생태.경관보전지역(시도)			24	37.98	37.98	-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33	135.76	135.76	-	
		습지보호지역(시도)			6	2.14	2.14	-	
		수변구역(4대강)		4대강 수계법	4	1,189.23	1,189.23	-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293	1,143.09	1,143.09	-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2	2,797.75	2,797.75	-	
		해수부	습지보호지역(갯벌)		습지보전법	17	1,683.35	-	1,683.35
			습지보호지역(시도)			1	6.15	-	6.15
	해양 보호구 역		생태계	해양생태계법	16	1,412.86	-	1,412.86	
			생물		4	96.01	-	96.01	
			경관		1	5.23	-	5.23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	4	1,882.05	982.58	899.47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28	3,227.83	714.17	2,513.66		
	국토부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녹지법	13	315.60	315.60	-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9,978.28	6,883.42	3,094.85	

	유산청	천연기념물		자연유산법	400	1,194.22	233.60	960.62
		천연보호구역			11	456.32	431.68	24.64
명승		136	231.64		214.53	17.11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법	1	2,781.02	2,781.02	-	
	산림 보호 구역	산림유전자원	산림보호법	1	1,886.26	1,886.26	-	
		생활환경		1	0.14	0.14	-	
		경관		1	188.60	188.60	-	
		수원함양		1	3,059.15	3,059.15	-	
		재해방지		1	34.89	34.89	-	
자연공존지역 (OECM)	보전재산		-	2	1.30	1.30	-	
	하천구역(특별보전지구)		-	1	115.78	115.78	-	
	학술림		-	1	0.90	0.90	-	
	수목원		-	2	27.33	27.33	-	
	자연휴양림		-	6	139.22	139.22	-	
	생태공원		-	1	0.05	0.05	-	
	댐 홍수터		-	3	0.29	0.29	-	

주: 면적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GIS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로, 실제 고시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IV. 비전 및 목표

2030 비전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
전략 목표	①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 → 국제사회 의무 이행 * 생태우수지역 30% 달성 노력 훼손지 30% 복원 침입외래종 50% 이하 관리 등 ② 자연혜택 지역 공유, 경제 효과 창출 → 정책 수용성 확대 * 생태관광 연계, 탄소 상쇄 이익 및 복원 일자리 창출 등 ③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 생물다양성 주류화 * 자연자본 정보 공시체계 마련,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정책분야 & 12개 핵심과제

	생태계	생물종
보전	①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②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③ 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④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 및 퇴치
이용	⑤ 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⑥ 자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⑦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관리 및 이용 ⑧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이행 강화	⑨ (기업)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⑩ (시민)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⑪ (과학) 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 및 과학적 평가 기반 구축 ⑫ (정부) 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	

21개 실천목표가 포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이행

Ⅳ.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주요과제

2030 비전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
목표	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OECM으로 관리되도록 노력 ② 지속가능 이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자연혜택을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

3대 전략 및 6개 추진과제

1. 보호지역·OECM 확대	1-1. 보호지역·OECM 지정·발굴 확대 1-2. 생물다양성 중요지역 보전 강화
2.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 개선	2-1. 보호지역 질적 관리 개선 2-2. 참여형 관리체계 강화
3.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	3-1. 보호지역 내 주민과 상생협력 강화 3-2. 보호지역·OECM 인근 주민·지역사회 혜택 강화

2. 국가 보전목표 및 성과지표

□ 2030 국가 보전목표



※ 내륙, 해양 OECM에 대한 검토 진행 중으로 이후 보호지역/OECM 비율은 변경 가능

□ 정책 패러다임

구분	기존에는(As is)	앞으로(To be)
주체	정부 중심	정부 + 지자체·기업·민간
대상	법정 보호지역	법정 보호지역 + OECM
목표	보전 중심	보전 + 지속가능 이용 확대
체계	부처별	통합적 접근(통합 DB + 플랫폼)
접근	규제, 제한적 보상	자발적 참여+자율적 규제, 협력+지원+혜택 강화

□ 주요 성과지표

전략	성과지표	현 상황('23.11)	목표('30)
1. 보호지역·OECM 확대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 (육상/해양)	17.3% / 1.8%	30% / 30%
	IUCN 녹색목록 인증 개소 수	3개소	15개소
2.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개선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습지·생태경관·산림유전자원·해양보호구역)	일부 이행	100%
	연간 보호지역·OECM 자원봉사자 수	약 43만명/년 ('21. 국립공원 57,125명)	40만명 이상/년 ('32. 국립공원 15만명 1)
3. 지역사회 상생기반강화	보호지역 내 생활여건 개선마을 (갯벌생태마을, 공원마을 등)	27개소	120개소
	자연기반 지속가능발전모델 수 (람사르습지도시, 생물권보전지역 등 중복 포함)	16개소	25개소